

수원대학교 사회봉사단 규정

□ 제정 : 2011. 06. 0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기구의 명칭은 수원대학교 사회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봉사단은 본 대학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맞춰 도덕적 인격인 양성과 국가사회에 대한 봉사의 실천으로 공동체의식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봉사단은 본 대학교에 둔다.

제4조 (기능) 봉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활동 계획수립
2. 사회봉사와 관련된 자원봉사자 모집
3. 사회봉사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
4. 사회봉사활동의 평가
5. 사회봉사와 관련된 교육 및 조사연구
6. 기타 사회봉사활동에 관련된 사항

제2장 기 구

제5조 (조직) ① 봉사단에는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사회봉사단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부단장 및 교육·평가담당, 실무간사는 단장이 임명한다.

② 봉사단에는 적정 인원의 직원을 두며, 교내 행정부서 소속 직원을 겸직시킬 수 있다.

③ 봉사단에는 교육·평가담당, 실무간사를 두며,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평가담당은 봉사자 교육 및 학사업무를 담당하고 사회봉사프로그램을 개발, 봉사활동 추진 계획 수립 및 평가를 담당한다.
2. 실무간사는 본교 행정직원 중에 단장이 임명하며, 대외 봉사기관, 단체의 관리 및 섭외활동과 실제 봉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3장 사회봉사단 운영위원회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봉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실장, 학생지원처장, 인문대학장, 생활과학대학장, 취업정보처장, 홍보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제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봉사단의 기본운영계획
2. 봉사단의 사업계획
3.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기관의 선정
4. 기타 봉사단 운영과 관련된 주요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제4장 가입 및 봉사활동

제8조 (구성 및 가입) ① 봉사단은 본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원, 직원 및 재학생 중에서 봉사단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② 봉사단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개별적으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봉사활동) ① 봉사단에 가입한 교원 및 직원은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② 봉사단에 가입한 학생들은 단장이 임명한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의 지도하에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③ 봉사활동 기간은 매월 1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하계 방학 기간 중에는 봉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봉사대상기관 선정) ① 사회봉사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및 비정치적인 단체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관
2. 지방사회 유형문화재를 비롯하여 재정 및 인력지원이 필요한 문화재 및 유관단체
3. 노약자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4. 가급적 캠퍼스에 인접한 기관
5. 기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6.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기관

제11조 (봉사대상기관 안내) ① 봉사활동대상기관은 봉사단장이 선정한 기관 중에서 지원자들이 선택한다.

② 봉사단장이 정한 봉사활동 대상 이외의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봉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예비교육) ① 봉사단에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예비교육을 매 학기 초에 실시하며, 신청자는 예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예비교육은 2시간으로 하며,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시킨다.

제13조 (지도교수) 지도교수는 전공이 사회봉사와 인접하거나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원한 교수로 선정한다. 그리고 지도교수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사회봉사 교과목 2학점 담당
2.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단체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진행
3. 수시로 봉사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활동내용을 확인하고, 봉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기

관대표와 협의하여 조치

제14조 (평가) ① 봉사활동을 완료한 학생지원자는 1주일 이내에 「사회봉사활동 일지」와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봉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각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학점을 「P」로 처리하고, 단위기간 내에 봉사활동을 이수하지 못하면 「F」로 처리한다.

③ 학점은 학기당 2학점이며, 졸업이수학점으로 최대 2학점(Pass)을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④ 지도교수는 봉사활동 종료 후 성적제출기한 내에 성적을 교무처로 송부한다.

⑤ 여름학과와 겨울학기의 학점처리는 계절학기 성적입력기간에 준한다.

제15조 (인증서 발급)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봉사단장이 발급한다.

제16조 (우수봉사자 포상) 봉사단장 또는 봉사대상기관에서 우수봉사자를 발굴하여 추진할 경우 총장은 우수봉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봉사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제정 규정은 2011. 6. 1부터 시행한다.